한국영어교육학회 회칙 변경 내역

〈창립회칙: 1965. 1. 22.〉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ULLA)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대학어학실험연구협회라고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둔다.

제3조 본회는 국내 각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어학실습실을 중심으로 하여 효율적인 대학 영어교육의 연구와 실제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영어 교수 및 학습의 과학적 연구 검토
2. 기관지의 발행
3. 영어학습의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
4. 연구발표회
5. 해외 어학교육기관과의 제유 연락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3장 회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단체 회원: 국내 각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
2. 개인 회원: 국내 각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기관의 교직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3.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간사회가 추천하는 자

제6조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4장 임원

제8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약간명 4. 감사 2명

제9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제4조의 사항 및 초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11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2조 본 회의 회의는 총회, 간사회의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3조 본 회의 총회는 단체 회원의 대표자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학년도 초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칙에 정해진 사항
2. 사업보고의 심의
3. 예산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변경
5. 기타 중요 사항의 결의

제15조 간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칙에 정해진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기타 주요한 회무의 심의 집행

제6장 재정

제16조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단체 회비 5,000원(연회비), 신규가입비 2,000원, 개인회비 3,000원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7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제7장 부칙

제18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행한다.

제19조 본회칙은 196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차 개정 회칙: 1973.8.11.〉

한국영어교육학회(CETA)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국내의 각급 학교의 영어교육과 학습에 관한 이론 및 실천의 연구와 이에 부대하는 제반 활동과 사업의 수행, 그리고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재직하는 학교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연구 발표회
2. 연구지 발간
3. 연구소(정보 센터 혹은 도서관) 설치
4. 공동 연구
5. 동류 혹은 인접 분야(기관)와의 제휴(국내외)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과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단체회원: 국내의 각급 학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관(기타 언어 교육 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각종 기관도 가함)
2. 개인회원: 국내 각급학교 교직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당분간 대학 재직자에 한정함)
3. 명예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영어교육에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간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4. 찬조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활동과 사업에 공헌이 있는 인사로서 간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6조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제4장 기구

제8조 본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중등 영어 분과
2. 대학 교양영어 분과
3. 영어 영문학 교육분과
4. 영어교육공학 분과

제5장 임원

제9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간사 약간명 4. 감사 2명

제10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관장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제4조의 사항 및 총회의 결의 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1조 본 회의 임원 선출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제12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3조 본 회의 회의는 총회, 간사회의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 본 회의 총회는 단체 회원의 대표자, 명예회원, 찬조 회원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총회의 결의는 개인 회원의 표결에 의한다.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하계방학 기간 중에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칙에 정해진 사항
2. 사업보고의 심의
3. 예산 결산의 승인

4. 회칙의 변경
5. 기타 중요 사항의 결의

제16조 간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회칙에 정해진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기타 주요한 회무의 심의 집행

제7장 재정

제17조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단체 회비 5,000원(연회비), 개인회비 5000원
2. 기부금 및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제18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제8장 부칙

제19조 본 회칙에 미비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하여 행한다.

제20조 본회칙은 1973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본회 개인회원 자격은 당분간 대학재직 교원으로서 강사급 이상으로 국한한다.

〈제2차 개정 회칙: 1975. 8. 1.〉

한국영어교육학회(CETA)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영어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1. 학보 간행
2. 연구 발표회, 강연회, 학술 교류

3. 영어교육관계 도서 출판
4. 영어교육관계 도서 및 자료의 수집 및 비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근무교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2.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약간명 4. 상임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제8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 회무를 통할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편집, 섭외이사로 한다.

제12조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 재무이사는 학회 재무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편집이사는 제2조에 규정한 제반 기획활동을 관장한다.

제15조 섭외이사는 본회 사업의 기획 수행에 수반되는 대외 교섭 일체를 관장한다.

제16조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결 선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의 이상에 의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이를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제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금으로 충당 경리한다.

1. 기금 2. 회비 3. 입회금 4. 특별 회사금 5. 사업 수익 6. 기타 수입

제2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8월 1일부터 익년 7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 상임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24조 본 회칙의 개정의 제청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으로써 행한다. 본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25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본 개정 회칙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잔류임기로 한다.

제27조 본 개정 회칙은 서기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차 개정 회칙: 1981. 8. 1.〉

한국영어교육학회(CETA)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영어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1. 학보「영어교육」간행
2. 연구 발표회, 강연회, 학술 교류
3. 영어교육관계 도서 출판
4. 영어교육관계 도서 및 자료의 수집 및 비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2.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약간명 4. 상임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제8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 회무를 통할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편집, 섭외이사로 한다.

제12조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 재무이사는 학회 재무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편집이사는 제2조에 규정한 제반 기획활동을 관장한다.

제15조 섭외이사는 본회 사업의 기획 수행에 수반되는 대외 교섭 일체를 관장한다.

제16조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결 선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연차 정기총회는 달리 예고가 없는 한 7월 둘째 주 금요일에 연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의 이상에 의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이를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금으로 충당 경리한다.

1. 기금 2. 회비 2. 입회금 4. 특별 회사금 5. 사업 수익 6. 기타 수입

제2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 상임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24조 본 회칙의 개정의 제청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의로써 행한다. 본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25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본 개정 회칙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잔류임기로 한다.

제27조 본 개정 회칙은 서기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본 개정 회칙은 서기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1항 제4조의 「동등자격」이라 함은 석사 학위를 가진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또는 영어교육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분들이 입회를 하고자할 때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항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을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장기계획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편집위원회, 출판위원회, 회원증강위원회, 재정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중등교육위원회〉

제3항 제2항이 정하는 위원은 가입 후 3년이 지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

하여 1년간 일을 맡기되 각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총회에 내놓을 안건을 심의 결정함을 주 임무로 삼는다. 단, 한 사람이 두 개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4항 모든 회의의 소집은 일주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4차 개정 회칙: 1988. 2. 26.〉

한국영어교육학회(CETA)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칭한다.

제2조 본회는 영어교육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 사업을 한다.

1. 학보「영어교육」간행
2. 연구 발표회, 강연회, 학술 교류
3. 영어교육관계 도서 출판
4. 영어교육관계 도서 및 자료의 수집 및 비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2.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약간명 4. 상임이사 약간명 5. 감사 2명

제8조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전반 회무를 통할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써 구성하며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대표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를 분장한다.

제11조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편집, 섭외이사로 한다.

제12조 총무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3조 재무이사는 학회 재무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제14조 편집이사는 제2조에 규정한 제반 기획활동을 관장한다.

제15조 섭외이사는 본회 사업의 기획 수행에 수반되는 대외 교섭 일체를 관장한다.

제16조 감사는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결 선임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류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8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연차 정기총회는 달리 예고가 없는 한 7월 둘째 주 금요일에 연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의 이상에 의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9조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회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이를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금으로 충당 경리한다.

1. 기금 2. 회비 2. 입회금 4. 특별 회사금 5. 사업 수익 6. 기타 수입

제22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말까지로 한다.

제23조 상임이사는 매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24조 본 회칙의 개정의 제청은 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의로써 행한다. 본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25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26조 본 개정 회칙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잔류임기로 한다.

제27조 본 개정 회칙은 서기 197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 본 개정 회칙은 서기 198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본 개정 회칙은 서기 198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1항 제4조의 「동등자격」이라 함은 석사 학위를 가진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또는 영어교육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가리킨다. 이 분들이 입회를 하고자할 때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항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제7조가 정하는 임원을 포함하는 아래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둔다. 〈장기계획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편집위원회, 출판위원회, 회원증강위원회, 재정위원회, 프로그램위원회, 대학교육위원회, 중등교육위원회〉

제3항 제2항이 정하는 위원은 가입 후 3년이 지난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여 1년간 일을 맡기되 각 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총회에 내놓을 안건을 심의 결정함을 주 임무로 삼는다. 단, 한 사람이 두 개 위원회에 소속할 수 있다.

제4항 모든 회의의 소집은 일주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5항 신임회장단 선출은 현 임원진과 전임회장단이 전형 위원이 되어 총회 전까지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5차 개정 회칙: 1995. 7. 1.〉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라 하며, 약칭은 KAT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아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영어교육」및 학회보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 교류
3. 영어교육관련 도서 및 자료의 출판, 수집 및 비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정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인으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특별회원) 전임회장은 정년퇴임과 동시에 종신회원이 되며, 학회가 인정하는 도서관, 연구소, 출판사 및 기타 기관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자격상실)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2.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8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5명 이내 3. 상임이사 9명 이내 4. 감사 2명 5. 자문위원(전임회장 전원)

제9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상임 이사회 위원과 자문 위원이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상임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회 전반 회무를 통괄하며, 상임 이사회, 확대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1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복수 부회장일 경우 상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제12조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편집이사로 한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3. 편집이사는 학회지와 학회보의 편찬, 도서 출판 및 학술 기획 활동을 관장한다.

제13조 감사는 학회의 경리사무를 회계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14조 자문위원은 확대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학회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인준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원 선출에 참여한다.

제15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원활한 학회 활동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3인 이내의 상임 이사의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보결 위촉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달리 예고가 없는 한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다음해 2월 둘째 주 금요일에 학술 발표회와 더불어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에 의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7조 확대 이사회는 상임 이사회 위원, 자문위원 및 감사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전에 개최한다. 확대 이사회 회의에서 상임 이사회의 중요 결정사항이 보고되고 인준을 받으며, 제9조가 정한 임원을 선출한다.

제18조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상임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의결하며, 확대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1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 경리한다.

1. 기금 2. 입회비 및 회비 3. 지원, 찬조 및 특별 회사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

제22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3조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확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상임 이사회의 심의와 혹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24조 본 회칙의 개정의 제청은 상임이사의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의로 행하며, 확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25조 본 개정 회칙은 서기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차 개정 회칙: 1999. 3. 1.〉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라 하며, 약칭은 KATE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아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 「영어교육」 및 학회보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 교류
3. 영어교육관련 도서 및 자료의 출판, 수집 및 비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전문인이나 기관, 혹은 단체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전임회장은 평생회원이 된다.

제6조 (자격상실) 회원은 하기 사항에 해당되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때
2.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이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7조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 부회장은 4인 이내로 둔다.
2. 상임이사는 20명 이내로 둔다.
3. 감사는 2인을 둔다.
4.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전원이 해당한다.

제8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상임 이사회 위원과 자문 위원이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상임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학회 전반 회무를 통괄하며, 상임 이사회, 확대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부회장은 총무·재무 담당 부회장, 편집·출판 담당 부회장, 국제 담당 부회장, 홍보·섭외 담당 부회장을 둔다. 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편집, 홍보·섭외, 국제이사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상임 이사직을 신설,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관계 사무를 관장한다.
3. 편집이사는 학회지와 소식지의 편찬, 도서 출판을 관장한다.
4. 홍보·섭외 이사는 학회의 홍보 업무를 관장한다.
5.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 교류 업무를 관장한다.
6. 신설되는 상임이사는 각 주어진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감사는 학회의 경리사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 자문위원은 확대 이사회의 위원이 되며, 학회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 받고 인준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원 선출에 참여한다.

제14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원활한 학회 활동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상임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 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 총회는 달리 예고가 없는 한 6월 마지막 주 금요일과 다음해 2월 둘째 주 금

요일에 학술 발표회와 더불어 개최한다.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에 의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6조 확대 이사회는 상임 이사회 위원, 자문위원 및 감사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전에 개최한다. 확대 이사회 회의에서 상임 이사회의 중요 결정사항이 보고되고 인준을 받으며, 제8조가 정한 임원을 선출한다.

제17조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 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상임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하고 의결하며, 확대이사회를 거쳐서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20조 본 학회는 산하에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 담당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23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칙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장 재정

제24조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입회비 및 회비 3. 지원, 찬조 및 특별 회사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

제25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6조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서 확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상임 이사회의 심의와 확대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7차 개정 회칙: 2003. 3. 1.〉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라 하며, 약칭은 KATE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본회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영어교육(English Teaching)」및 소식지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 교류
3. 영어교육관련 도서 및 자료의 출판, 수집 및 비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입회 및 회원의 구분) ①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기관, 단체는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단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2. 기관회원: 도서관,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3. 협력회원: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기관이나 단체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 학술대회에 참석할 권리, 본 회의 간행물에 투고할 권리, 본 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
2. 부회장은 편집·출판담당 부회장, 기획·조정담당 부회장, 연구·개발 담당 부회장, 섭외·홍보담당 부회장 등 4인 이내
3. 상임이사는 30명 이내
4. 감사는 2인
5. 자문위원 약간 인

제8조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상임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전원을 추대한다.

제9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부회장의 임무) 각 부회장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국제, 섭외, 연구, 학술정보,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직을 신설,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
3.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
4.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섭외 업무를 담당
5.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

6. 학술정보이사는 학회의 학술정보, 회원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7. 편집이사는 학회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
8. 신설되는 상임이사는 각 주어진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학회의 경리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 (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임원 회의에 참석한다.

제14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원활한 학회 활동의 연계를 위하여 상임이사직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본 회의 학술대회 마지막 날에 개최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개인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

제16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제7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원 회의에서는 상임이사회의 중요 결정사항을 보고 받고 인준하며 제8조 ①항에 명시한 임원을 선출한다.

제17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상임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중요 결정사항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본 회의 운영을 돕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20조 (구성) 본회는 편집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1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 (위원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출판담당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23조 (세부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술대회

제24조 (학술대회) ①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학술대회 개최일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둔다. ③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입회비 및 회비
3. 지원, 찬조 및 회사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금

제2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예결산) ①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받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예산은 상임 이사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28조 (회칙의 개정) ① 이 회칙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차 개정 회칙: 2006. 6. 24.〉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영어교육학회라 한다. 영문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of Teachers of English이며 KATE로 약칭한다.

제2조 (목적) ① 본회는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②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지「영어교육(English Teaching)」및 소식지의 간행
2. 학술발표회 개최 및 학술 교류
3. 영어교육관련 도서 및 자료의 출판, 수집 및 비치
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입회 및 회원의 구분) ①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기관, 단체는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당해 연도의 회비를 납부한 후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단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 기관이나 단체는 별도의 협약에 따라 회원이 된다. ② 회원은 개인회원, 기관회원, 협력회원으로 구분한다.

1. 개인회원: 영어교육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가지는 개인
2. 기관회원: 도서관,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
3. 협력회원: 영어교육에 종사하는 영리기관이나 단체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권리, 학술대회에 참석할 권리, 본 회의 간행물에 투고할 권리, 본 회의 간행물을 받아볼 권리 등을 가진다. ②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2. 특별한 이유나 통고 없이 3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에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은 1인
2. 부회장은 편집·출판담당 부회장, 기획·조정담당 부회장, 연구·개발 담당 부회장, 섭외·홍보담당 부회장, 국제·정보담당 부회장 등 5인 이내
3. 상임이사는 30인 이내
4. 감사는 2인
5. 자문위원 약간 인

제8조 (선출)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② 상임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전원을 추대한다.

제9조 (회장의 임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상임이사회, 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0조 (부회장의 임무) 각 부회장은 담당업무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상임이사의 임무) 상임이사는 총무, 재무, 국제, 섭외, 연구, 학술정보, 편집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직을 신설, 운영할 수 있다.

1. 총무이사는 학회의 행정 및 총괄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2. 재무이사는 학회의 재무 관련 업무를 담당
3. 국제이사는 학회의 국제 교류 업무를 담당
4. 섭외이사는 학회의 대외관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섭외 업무를 담당
5.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및 개발 업무를 담당

6. 학술정보이사는 학회의 학술정보, 회원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7. 편집이사는 학회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담당
8. 신설되는 상임이사는 각 주어진 업무를 총괄한다.

제12조 (감사의 임무) 감사는 학회의 경리 업무를 회계 연도마다 감사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13조 (자문위원의 임무)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임원 회의에 참석한다.

제14조 (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원활한 학회 활동의 연계를 위하여 상임이사직은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5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회장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본 회의 학술대회 마지막 날에 개최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개인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

제16조 (임원회) ① 임원회는 제7조에 명시한 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원 회의에서는 상임이사회의 중요 결정사항을 보고 받고 인준하며 제8조 ①항에 명시한 임원을 선출한다.

제17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상임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중요 결정사항을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에 보고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본 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편집위원회

제20조 (구성) 본회는 편집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1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22조 (위원장)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출판담당 부회장이 겸임한다.

제23조 (세부규정) 편집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장 학술대회

제24조 (학술대회) ①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단 학술대회 개최일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학술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둔다. ③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5조 (수입)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입회비 및 회비
3. 지원, 찬조 및 회사금
4. 사업 및 기타 수입금

제2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7조 (예결산) ① 매 회계 연도 말에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받고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예산은 상임 이사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8장 회칙의 개정

제28조 (회칙의 개정) ① 이 회칙은 상임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또는 개인회원 3분의 1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회칙의 개정안은 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부칙

이 개정 회칙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역대 임원진 명단

제1~2대 회장단(1965. 1. ~ 1968. 12.)

회장	전형국	연세대
부회장	신상순	전남대
	김종출	부산대
간사(총무)	나건석	연세대
간사	김영희	경북대
	이동재	한국외대
	번브럭	서강대
	강수언	제주대
감사	박경수	중앙대
	박상용	충남대

제3대 회장단(1969. 1. ~ 1971. 1.)

회장	전형국	연세대
부회장	박상용	충남대
	양병택	경희대
간사	나건석	연세대
	김영희	경북대
	이창호	한국외대
	이종찬	중앙대
	김종출	부산대
감사	신상순	전남대
	강수언	제주대

제4~5대 회장단(1971. 2. ~ 1974. 8.)

회장	신상순	전남대
부회장	이종찬	중앙대
	송현섭	전북대
간사(총무)	조명원	전남대